

부산직할시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 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, 자랑스런 구민상, 질서상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, 자랑스런 구민상은 효행선행상, 교육문화상, 산업근로상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.

다만,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

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7 조(자랑스런 구민상) 자랑스런 구민상은 3년 이상 부산직할시사하구 내에 거주한 자로서 별지 4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구정발전, 사회복지증진, 근로정신 함양과 생산성 향상, 사회도의 양양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.

제11조 제 2 항 중 “별표 1” 및 “별표 2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13조 제 2 항 및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분청 국장, 실·과장 이상 간부 5명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

1. 대학 총·학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2명
2. 구 관할 정부기관(교육, 경찰, 세무)의 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1명
3. 사하구 관내 각급 학교장 및 구의원 7명
4. 지역 원로 및 저명인사 5명

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.

제14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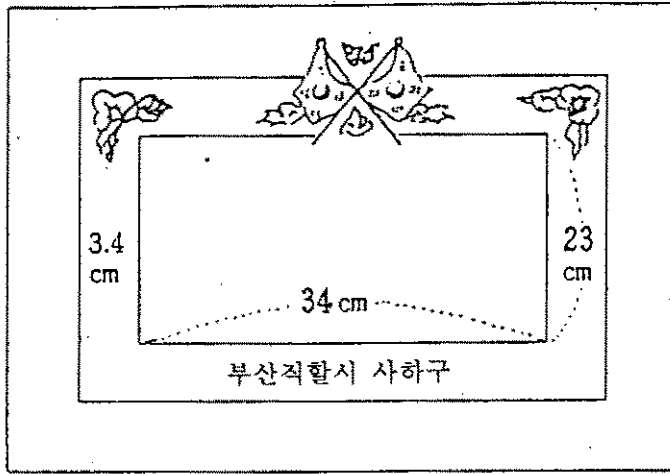
③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시 시상하고 시상인원은 3개 부문으로 하되 수상자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한다.

(별지 제 4 호 서식)

시 상 부 문	선 정 기 준
산업근로상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근 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노사 화합에 이바지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자 ○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으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○투철한 사명감으로 회사 및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자 ○저축을 생활화하며 자립정신이 투철한 자 ○기타 타의 모범이 된 자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경 영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자 ○창의적인 정신으로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힘써 기업발전을 이룬 자 ○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자 ○해외투자 및 수출에 힘써 외화획득에 공이 많은 자 ○기타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경영철학을 가진 모범 경영자

(별표 1)

포상용 용지 규격



(별표 2)

기념휘장 규격 및 제식

본국인 상패

외국인 상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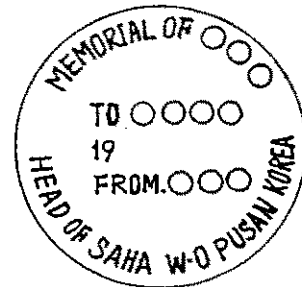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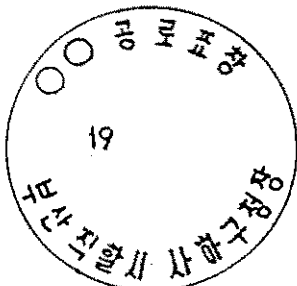
전면

전면



뒷면

뒷면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 1 조(목적) 생략		제 1 조(목적) 현행과 같음		
제 2 조(포상대상) 생략		제 2 조(포상대상) 현행과 같음		
제 3 조(포상시기) 생략		제 3 조(포상시기) 현행과 같음		
제 4 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, 자랑스런 구민상, 질서상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, 자랑스런 구민상은 효행선행상, 교육문화상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. 다만,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		제 4 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, 자랑스런 구민상, 질서상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, 자랑스런 구민상은 <u>효행선행상</u> , <u>교육문화상</u> , <u>산업근로상</u> 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. 다만,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		
제 5 조(표창장) 생략		제 5 조(표창장) 현행과 같음		
제 6 조(질서상) 생략		제 6 조(질서상) 현행과 같음		
제 7 조(자랑스런 구민상) 자랑스런 구민상은 3년 이상 부산직할시 사하구내에 거주한 자로서 별지 4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구정발전, 사회복지증진, 사회도의 양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.		제 7 조(자랑스런 구민상) 자랑스런 구민상은 3년 이상 부산직할시 사하구내에 거주한 자로서 별지 4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구정발전, 사회복지증진, <u>근로정신 함양과 생산성 향상</u> , 사회도의 양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.		
제 8 조(감사장) 생략		제 8 조(감사장) 현행과 같음		
제 9 조(상장) 생략		제 9 조(상장) 현행과 같음		
제 10 조(모범공무원 포상) 생략		제 10 조(모범공무원 포상) 현행과 같음		
제 11 조(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) 생략		제 11 조(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) 현행과 같음		
제 12 조(포상 절차 등) 생략		제 12 조(포상 절차 등) 현행과 같음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) ① 생략</p> <p>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총무국장, 도시국장, 기획감사실장, 총무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생략</p> <p>3. 사하구 관내 각급학교장 5인</p> <p>4. 지역원로 및 유지 7인</p> <p>③ 생략</p> <p>④ 생략</p> <p>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.</p> <p>제14조(포상시기) 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시 시상하되 시상 인원은 2개 부문으로 한다.</p> <p>④ 생략</p> <p>제15조(포상통제) 생략</p> <p>제16조(이중포상 금지) 생략</p> <p>제17조(포상대장의 등재) 생략</p> <p>제18조(규칙) 생략</p>	<p>제13조(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) ①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<u>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본청 국장, 실·과장 이상 간부 5명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</u></p> <p>1.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2.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3. <u>사하구 관내 각급학교장 및 구의원 7명</u></p> <p>4. <u>지역원로 및 저명인사 5명</u></p> <p>③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④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<u>해촉된다.</u></p> <p>제14조(포상시기) ①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②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③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시 시상하고 시상 인원은 <u>3개 부문으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 한다.</u></p> <p>④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제15조(포상통제)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제16조(이중포상 금지)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제17조(포상대장의 등재)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제18조(규칙) <u>현행과 같음</u></p>